「홍천군 첨단바이오산업 활성화 지원사업」 지역(홍천군)선도기업 육성사업

홍천군은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 연고기업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'지역(홍천군)선도기업 육성사업'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홍천군 관내 수요기업들은 아래 안내문을 참고 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> 2025년 6월 4일 홍천군수, (재)강원테크노파크 원장

1 사업 개요

- (사 업 명) 지역(홍천군)선도기업육성사업
- (사업추진) 홍천군 ※ (전담기관) (재)강원테크노파크
- (사업목적) 탁월한 성과창출 및 지역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첨단바이오산업분야 홍천 연고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 지원
- (사업내용) 메디칼허브자원, 바이오기반 치료기술 바이오기반 진단기술 AI/빅데이터 등 분야 기술개발 지원
- (지원예산) 총 20억원/4년
 - st '25년 \sim '28년까지 4년간, 매년 수혜기업 선정·지원 예정이며, '25년 기업지원금 5억원

2 지원내용 및 대상

가. 지원내용

- (지원분야) 메디칼허브자원, 바이오기반 치료기술 바이오기반 진단기술 AI/빅데이터, 기타
- (모집분야)
 - (유형 1: 연계형) '일자리 창출형 첨단산업 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' 수혜기업 중, 최종평가 결과 '우수'등급 이상 수여 중소·벤처기업
 - (유형 2: 경쟁형) 홍천군 내, 첨단바이오산업 분야 종사 중소·벤처기업
 - ※ (중소기업)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
 - ※ (벤처기업) 「벤처기업법」제2조
- (지원규모) 총 10억원 내외로 2년간 지원
 - (연계형) 총 2억원 내외/년, (경쟁형) 총 1.5억원 내외/년

<'25년도 지역(홍천군)선도기업육성사업 규모>

구분	지원기간	분야	예산	선정규모	지원분야
다년도	2년 ('25년~'26년)	연계형	총 4억원 내외 (1차년도: 2억원 이내)	1개 이내	메디칼허브자원, 바이오기반 치료
		경쟁형	총 6억원 내외 (1차년도: 1.5억원 이내)	2개 이내	기술, 바이오기반 진단기술 AI/ 빅데이터 등

나. 추진체계

-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, 필요할 경우 공동연구 개발기관 가능
 - ※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,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지원하는 형태로 구성해야 함, 단순 나눠먹기식 구조를 설정할 경우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선정 제외로 판정할 수 있음

다. 지원대상 및 자격

- (신청자격) 홍천군 소재 첨단바이오분야 기업(본사/공장/기업부설연구소)
 - ※ 본사, 공장, 기업부설연구소 중 하나만이라도 홍천군 소재지면 신청대상 인정하며, 기업부설 연구소의 경우 사업기간 내 지점 등록을 완료해야 함
 - ※ 공장 소재지 기준 참여 시, 공장등록증 제출 증빙 필요, 기업부설연구소 소재지 기준 참여 시,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제출 증빙 필요
 - ※ 본 사업 신청 당시 홍천군에 소재하던 본사 도는 공장등록지, 기업부설연구소를 본 사업 선정 이후 홍천군 이외의 지자체로 이전 시. 선정 취소 및 사업비 환수

○ (지원 제외 대상)

- 「강원특별자치도 첨단산업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」등을 근거로 신청과제 사전 검토 시 결격사항이 발생할 경우
- 주관기관,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
- 세무당국에 의한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해이 확인된 경우(선정기업대상 추가 확인 예정)
- 부도, 파산, 회생절차,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- ※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
- 최종 선정 통보 이후 연구비에 대한 보증보험 제출이 불가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사전검토 이후라도 동일한 과제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기 지원받은 기업
-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

라. 연구비 구성 및 민간부담금

○ "강원특별자치도 첨단산업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"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

<간접비 비율 산정>

구분	간접비 구성	
수혜기업	현금	5% 이내

<홍천군 지원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>

O월	이네이지 내내다 다음이		민간부담금 구성		
유형	월 배자 내비지	민간부담금 비율	현금비율	현물비율	
벤처기업 중소기업	75% 이하	25% 이상	10% 이상	90% 이하	

※ (현물) 사업화를 위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비(5년 이내/취득가액의 20%만 계상) 및 협약기간 내에 소요되는 참여인력 인건비로만 구성되며, 현물이 부족한 경우 현금으로 대체 부담 가능

마. 기술료 징수 및 방법

- 과제 종료(조기 종료 포함) 후 평가결과 우수, 완료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 기관에게 성과와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
- 기술료를 납부하는 영리기관은 정해진 방식에 따라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, 세부사항은 과제 종료 후 안내
 - ※ 세부사항은 "강원특별자치도 첨단산업 기술개발 운영요령" 및 "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"에 따름

3 평가 절차 및 기준

가. 목표·지표 설정 방법

○ (R&D) 주관연구기관은 "분야별 기술개발 목표"를 고려하여 최종 기술개발 목표를 제시

분야		기술개발 목표		
· ·		TRL단계	내용	
메디컬허브 자원	기능성 식품	TRL7	시제품 및 신뢰성 평가 완료	
메니얼어드 자전	기능성 화장품	INL/	시세품 및 인되당 당가 원표	
혁신바이오의약		TRL4	후보물질(Candidate) 확보	
차세대 바이.	오진단	TRL5	시제품 개발 및 성능평가	

- *「일자리 창출형 첨단산업 육성사업」을 수행한 기업의 경우, 후속개발단계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야 함
 - 주관기관는 신규고용에 대하여 성과지표로 필수적으로 설정하여야 함
 - ※ (신규고용) 홍천군 소재지 근무 인력 연 1명 이상 신규고용 필수
 - "논문 게재"는 본 사업의 성과지표로 설정할 수 없음, 다만 최종 평가시 기타 성과로 인정

나. 지원절차 및 일정

구분	수행주체	내용	일정
사업공고	강원TP	• 강원TP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공고	'25. 6. 4. ~ 6. 25.
\downarrow			
사업계획서 접수	주관기관·업	• 강원특별자치도 연구개발사업관리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접수	'25. 6. 4. ~ 6. 25.
\downarrow			
사전검토	강원TP	• 요건 및 제출서류 등 검토	'25. 6 26. ~ 6 30.
\downarrow			
선정평가	강원TP	• 발표평가 및 과제 선정 • 연구비 조정 및 결과 통보	'25. 7월 초
<u></u>			
협약체결	강원TP 및 주관기관 업	• 협약체결, 예산배분 및 과제수행	'25. 7월 중
<u></u>			
진도관리 및 모니터링	강원TP	•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	사업 기간 중 상시
최종평가	평가위원회	• 결과보고서 제출 및 과제 수행 결과 평가	'26. 1월 중 예정

※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다. 평가방법 및 기준

- 사전서류 검토
 -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수행기관 신청자격 충족 여부, 유사·중복성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
 - 공고내용과의 부합성, 기개발/기지원 여부,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, 참여 제한 여부,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
- (선정평가) 연계형과 경쟁형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되, 연구책임자 발표
 - (통과기준) 70점 이상 중 상위과제
 - (연계형) 「일자리 창출형 첨단산업 육성사업」로 우수등급을 획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

<연계형 과제 평가기준>

구분	평가항목	배점	평가내용
계획의	목표 명확성	10	·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달성 계획의 구체성 등
적정성(20)	추진계획의 적정성	10	•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, 연차별 추진계획의 적정성 등
사업추진 체계(40)	연구개발기관 역량 및 의지	25	∘ 연구책임자, 참여연구자의 전문성 ∘ 관련 시설장비 보유 및 기술개발 역량
체 계(40)	연구개발비 적절성	15	• 연구개발비 산정 내역 적절성 및 규정 준수 여부
개발내용의	성공 가능성	15	∘ 사업 목적 및 목표 달성 가능성 ∘ 최종목표의 시장진출 및 경쟁력 확보 가능성
타당성(30)	연계성	15	·기 추진 연구개발과제와의 연계성
기여도(10) 지역 기여도		10	∘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여도 ∘지역 일자리 창출 기여도
합계		100	

- (경쟁형) 해당 분야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'사업계획의 타당성', '사업화 성공 가능성', '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'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<경쟁형 과제 선정평가 기준>

평가항목	평가지표	배점	평가 착안사항
	사전준비성	5	·관련 규제 및 시장 Needs 조사 여부
	사업화 개발 목표의 타당성	10	·목표지표 설정의 적정성 및 명확성 ·목표달성 가능성 ·최종목표의 시장진출 및 경쟁력 확보 가능성
사업계획의 타당성 (35점)	사업화 역량 5		· 대표이사, 총괄책임자의 추진역량 · 장비·시설, 인력 등 인프라 보유 역량
	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	15	·추진체계 및 수행기관간 업무분담 적정성 ·추진전략 및 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·사업 내용 대비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·기 수행 P&D성과의 활용우수성(범부처연계형만 해당)
사업화 성공 가능성 (35점)	비즈니스모델의 적절성	25	·목표기술 및 제품의 시장규모, 성장가능성 ·신규시장 진입장벽 해소전략 및 실현가능성 ·수요처 확보 가능성 및 판로구축의 다양성 ·마케팅 전략 및 양산 추진계획의 구체성 ·R&D성과를 활용한 융합 및 타 분야 적용가능성
	시장 진출 가능성	10	· 관련 제품 매출·수출 등 시장 진출 가능성
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 (30점)	일자리 창출 효과	20	・과제성공시 신규 일자리 창출 가능성
	산업적 파급 효과	10	·사업화대상기술 및 해당산업의 경제적 효과 ·수입대체 및 신시장 창출 효과
	합계 (100점)		

4 신청 방법

가. 신청요령

- (신청기간) '25년 6월 4일(월) ~ 6월 25일(금) 24:00까지 온라인(GWRDMS) 제출
- (신청서식 교부) 강원특별자치도연구개발사업관리시스템(GWRDMS)를 통한 서식 다운로드
 - ※ 강원특별자치도 연구개발사업 관리시스템(GWRDMS(http://gwrdms.gwtp.or.kr/)
- (신청방법)
 - 강원특별자치도연구개발사업관리시스템(GWRDMS) 회원가입 후 로그인 → 사업공고(R&D) → 사업공고 →해당공고 클릭 후 → 접수하기
 - ※ 회원가입 후 관리자의 가입 승인 필요(1∼2일 소요)

나. 제출서류

연 번	서 류 명	비고
1	사업계획서	-
2	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확인서	_
3	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	_
4	기업지원사업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동의서	_
5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_
6	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관내 이전 확약서(해당시)	_
7	법인등기부등본	_
8	사업자등록증	_
9	재무제표('23~'25) 3개년 *25년도의 경우 자본,자산,부채 등이 확인 가능한 추정재무제표 또는 내부결산자료(담당자 및 회사 직인必) 제출	_
10	과제 참여자의 재직 증명서(4대보험 가입증명 등)	-
11	홍천군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본사, 공장, 기업부설연구소)	_

- ※ 온라인으로 제출시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
 - (원본제출) 최종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신청서 및 원본서류 제출 별도 안내

다. 문의처

담당자	이메일	전화번호	
(재)강원테크노파크 김범석 과장	kbs86@gwtp.or.kr	033-435-8471	

5 기타 사항

가. 과제 유의사항

구분	주요내용
	○ 연구시설·장비 구매 불가 ○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
연구비 산정	 ※ 중소·중견기업의 경우,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(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 개월부터, 계속 과제는 해당연도 협약 개시일 전 6개월부터, 각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)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. 이때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. ※ 창업초기 중소기업(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 미만의 중소기업)의 경우에는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 할 수 있음 ※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(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)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
	 ○ 연구비 편성은 「강원특별자치도 첨단산업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」따라 산정하여야하며,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인건비, 간접비 등 연구비가 조정될 수 있음 ○ 간접비 산정 시 직접비의 5% 이내로 산정하여야 함 ※ 직접비(미지급인건비,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 금액) ○ 해당 과제의 지출에서는 모든 종류의 상여금은 지출은 할 수 없으며, 지출할시에 연구비 환수 등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
성실수행	 ○ 사업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담기관에서 요구하는 (수시, 정기) 모니터링 및 중간평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, 불응 시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 ○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(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)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○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에서 성실수행의 판단여부는 연구개발과정, 연구성과, 연구비 관리 및 집행 및 의무사항(최종보고서 미제출 등)・시행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함 ※ 관련내용은 「강원특별자치도 첨단산업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」참고
연구윤리	○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"위조, 변조, 표절, 부당한 논문 저자 및 발명자 표시 등"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강원특별자치도 연구 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
보증보험	○ 「강원특별자치도 첨단산업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」에 의거하여 평가 이후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은 이행보증보험을 발급받고 제출해야 함
연구비	○ 연구비는 사업목적에 해당하는 과제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,
집행	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연구비 환수 등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
신규고용	○ 주관기관은 1년에 1명 이상의 신규인력을 필수로 고용하되, 홍천군 소재지에서 근무하여야 함 ○ 신규 고용된 인력이 본 과제 수행 및 홍천군 소재지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을 경우 연차(최종)평가에서 미흡 판정 예정 ※ (미흡 판정) 심층검토위원회를 통해 "성실수행", "불성실 수행" 여부를 판단하며, "불성실 수행"의 경우 사업비 환수 조치 및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사업 3년간 지원 제외

6 기타 사항

→ 연구비는 반드시 "강원특별자치도 첨단산업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"에 따라 편성하되, 해당 지침에 관련 요령이 없는 경우 "국가연구개발혁신법", "산업기술혁신산업 공통운영요령", "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 운영요령" 등에 따름

□ 근거법령

- 홍천군 첨단바이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
-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

□ 관련규정

- 강원특별자치도 첨단산업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
- 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
-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
-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
-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
-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
-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·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
-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
-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
 - ※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름
 - ※ 관련 규정은 홍천군 및 (재)강원테크노파크 규정 제·개정시 소급적용 가능ㅋ

7 첨부자료

- 첨부1.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
- 첨부2.「강원특별자치도 첨단산업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」등 관련규정
- 첨부3. 강원특별자치도 연구개발사업관리시스템 사용법(과제접수방법)



